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349호

2026년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 모집공고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의 일환으로, 글로벌 산업 환경변화 대응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전북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지원 프로그램)**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

○ **(지원목적)**

- 수출물류비 부담 완화 및 수출기업의 안정적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대내외적인 위기에 따른 기업애로 해결 신속 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17개사 내외 지원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 상 **①본사가 전북 도내 소재, ②전북 주력산업 분야 KSIC 코드 보유** 중소기업이면서 **③금년도 수출실적 보유기업**

① 도내 본사 소재 기업

- 지사, 공장, 연구소만 전북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② 전북 주력산업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가 왼쪽부터 4자리까지 일치하는 업종코드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단, 해당 업종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력산업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전북TP(또는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해당 여부 판단)**

* 전북 주력산업 KSIC 코드 **붙임 2, 3, 4 참조**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평가 후 조정될 수 있음)
- 2026. 1. 1. ~ 공고마감일까지 수출실적에 따른 수출물류비
- 해상/항공운송료, 부두/창고 사용료, 채선료 및 반환지연료, 반송물류비 등

지원분야	상세내용
국제운송비	LCL, FCL 등 해상운송료, 항공화물(air freight) 운송료
국내외 창고료	Warehouse charge, Storage Charge, THC, W/F 등
국내외 내륙운송료	국내외 내륙운송료 지원
해외 전쟁(분쟁)에 따른 리스크 비용 지원	Demurrage Charge(체선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 등
적하보험료	Insurance Fee 등

2 신청 및 평가방법

○ **(공고/접수기간)** 2026. 11. 2.(월) ~ 11. 20.(금), 18:00까지

○ **(지원 상세내용)**

- 지원대상 기간 내 발생한 수출실적에 대하여 단일 또는 다수 건의 해외물류비(항공·선박) 합산 비용 / ※ EMS 불가

*** 직접수출 및 간접수출 둘 다 인정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접수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한국무역협회 발급증명서
- (간접수출) 외국환은행장 발급증명서,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

- 단일 또는 다수 건의 물류비 합산 비용의 80% 지원
- 단일 또는 다수 건의 물류비 합산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1개 기업 기준)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처 : www.smtech.go.kr/region/rms

※ 회원가입 완료 후 과제 신청 가능

※ 마감일 접속 증가에 따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요망

- **(제출서류)** 첨부서식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必

연번	제출서류	필수	비고
1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O	서식 1
2	참여의사 확인·개인정보 이용동의서	O	서식 2
3	청렴서약서	O	서식 3
4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O	서식 4
5	자가진단표	O	서식 5
6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주업종코드 확인서	O	붙임 2, 3, 4 참조
7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법인통장	O	-
8	'23~'25년(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O	-
9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025년)	O	공고일 이후 발급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O	공고일 이후 발급
11	2026년 수출신고필증 (수출 이행에 한하며, 적재 전은 불가), 인보이스, BL	O	
12	물류비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영수증 첨부지 양식 활용)	O	
13	2026년 수출실적 증명서(전체)	해당시	

❍ 물류관련 증빙자료

- **항공 및 선박 수출(인천공항, 평택항, 부산항 등)**

·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함(신고일자, 수출 유형, 적재항, 국가, 수출제품 총 중량 및 금액 등 정보)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발급

· 해외운송주선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 THC : 컨테이너 조작비용 W/F : 부두사용료

CPS Charge : 창고 이용료 등 확인(전 항목 부가세 제외)

· 국내운송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 발송인의 경우 업체명이 아닌 개인이 발송할 경우, 근로증명서로 확인

· 결제 영수증(날짜, 국가, 금액, 중량 등) - **서식 1 내 영수증 첨부지 양식 활용**

○ **(평가방법)**

- 사업 평가방법 :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서류 평가
- 사업 평가지표 : 수출역량 및 실적 기대효과 등을 반영하여 기업 선정

온라인(RMS) 신청 및 서류제출 ▶ **선정평가위원회** ▶ **최종 기업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추진 상황에 따라 절차와 방법/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 : 중기청, 코트라, 경진원 등 타 지원기관을 통해 물류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26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과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을 통해 두 사업 합산 5,0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한도를 이미 초과한 기업은 신청 불가

*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 잠재초기, 예비선도, 지역혁신선도, 초광역권선도, 수출새싹

**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사업(돋움, 도약, 선도, 글강 등)과는 별개의 사업임.

○ **(기업부담금)** 단일 또는 다수 건의 물류비 합산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기업부담금임.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엔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장
-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전자접수시스템 외 제출 불가**(이메일 등 타 경로 제출 불인정)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기업은 지원사업 완료 후 3년까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성과측정 제반서류(재무제표, 고용보험가입자증명서, 기타 우수사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신청제외 대상
1	필수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제출된 서류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2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3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4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5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6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7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8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4 관련규정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5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세부사업명	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기업지원단	송지연	063-219-2124	jysong@jbtp.or.kr

○ 시스템 관련 문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SMTECH 회원가입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공급기업 등록문의		
RMS 시스템 오류문의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